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**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아세안 프론티어스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**

2. **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**

3. **정정사유:**
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**정정사항: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**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**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**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**

2. **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**

3. **정정사유:**
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- 일부 자투자신탁 삭제

4. **정정사항: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일부 자투자신탁 해지	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**1.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** **2.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** 3.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삭제)	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**1.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** **2.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**
제 33 조(이익분배)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零'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

			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**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아세안프론티어스 증권자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**

2. **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**

3. **정정사유:**
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**정정사항: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**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**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**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아세안프론티어스 증권자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**

2. **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**

3. **정정사유:**
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**정정사항: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**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**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**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**

2. **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**

3. **정정사유:**
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**정정사항: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**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**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**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**

2. **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**

3. **정정사유:**
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**정정사항: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**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**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② 현행과 같음